##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전종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542

발의연월일: 2024. 11. 14.

발 의 자:전종덕·정혜경·박홍배

추미애 • 이수진 • 주철현

송재봉 • 윤종오 • 정을호

김 윤 · 임광현 · 오세희

송옥주 · 임미애 · 문대림

이워택 • 서삼석 의원

(17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, 기본계획에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와 양식산업의 현황 및 전망 등에 관한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는 양식생물의 새로운 질병 및 대량폐사를 야기하는 등 양식산업 발전에 커다란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함에도 기본계획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문제점이 있음.

이에 기본계획에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선제

적으로 대처하여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6 조제2항제4호 신설). 법률 제 호

##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양식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) 제6조제2항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6조(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) ①	제6조(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) ①		
(생 략)	(현행과 같음)		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	②		
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		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		
<u>&lt;신 설&gt;</u>	4.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		
	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		
	응방안에 관한 사항		
<u>4.</u> ~ <u>9.</u> (생 략)	<u>5.</u> ~ <u>10.</u> (현행 제4호부터 제9		
	호까지와 같음)		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		